

2026년 제5회 성남시의회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6년 제5회 성남시의회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6년 10월 12일

성남시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선발 예정인원

근무 예정부서	채용분야 (채용직급)		채용 인원	계약 기간	근무 시간	직 무 내 용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정책 지원관	지방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7급)	1명	채용일로부터 1년	주 40시간	•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작성, 참석지원 •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규정 과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지방한시임기제 7호	1명	채용일 ~ 2028. 2. 15.	주 35시간	
	일반 행정	지방한시임기제 9호	2명	채용일 ~ 2027. 12. 31.	주 35시간	• 의회 의원 의정활동 지원 업무 • 의회 운영 관련 행정업무 전반 • 기타 업무분장에 따라 지정한 업무

- ※ 일반임기제공무원 임기는 근무실적에 따라 총 근무년수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 ※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횟수에 관계없이 총 1년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육아휴직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으로 하며, 육아휴직 공무원의 휴직 연장, 복직 등 사유 발생 시 근무기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음

2. 관련 법령

-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27조제2항
-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 제17조, 제21조의3
-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정자치부 예규)
-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 공통 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
 -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8. 12. 31. 이전 출생한 사람)
 - 주소지와 성별은 제한 없음
- ※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결 격 사 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 ④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 세부 요건 :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 임용분야별 [응시자격 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관련 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단,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은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5항)
- 모든 경력은 군대 등 의무복무 경력은 제외함.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주40시간 미만 근무 시 근무기간 산정은 시간할 계산됨.(불명확할 경우 불 인정될 수 있음)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 따라 일반임기제 공무원의 상위 계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채용예정 분야	채용예정 직급	자격기준
정책지원관	지방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	【자격 요건】 ○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3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한시임기제 7호	【자격 요건】 ○ 학사학위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전문대학의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회, 지방의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에서 지정된 공공기

	관, 공기업, 연구소, 민간기업 등에서 행정, 법무, 세무, 재정, 회계, 지방자치, 경제, 재난안전, 조사·감사, 복지, 도시계획, 토목, 건축 관련 업무 실무경력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를 상세히 명시 ※ 지방의회 근무경력자 또는 정책지원관 근무경력자 우대	
일반행정	한시임기제 9호	【자격 요건】 ○ 6개월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 각급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사기업 포함) 등에서 사무행정 실무경력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가 상세히 명시 【우대 조건】 ○ 지방의회(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국회 등 근무 경력 ○ 컴퓨터 활용능력 우수자(관련 자격증 소지자)

4. 시험 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 채용예정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이 채용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5조 제4항)

□ 2차 시험 : 면접시험(개별 역량면접)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적격성을 구술에 의한 문답식으로 검정
- 검정항목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에서 정한 아래의 5개 항목으로 함
 -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일 전에 인성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인성검사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면접시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성적 우수자 순으로 결정함
- ※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면접시험 결과에 따른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결과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성적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5. 시험일정 및 원서접수

□ 시험 일정

모집 공고	원서 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인성 검사	면접 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2026. 10. 12. ~ 10. 21.	2026. 10. 22. ~ 10. 26.	2026. 10. 30. 전후	2026. 10. 31. ~ 11. 1.	2026. 11. 5. 전후	2026. 11. 6. 전후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및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면접시험 예정일은 응시자격 확인을 위한 기준일이며 구체적인 면접시험 시험일은 성남시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일정은 개인별로 통지하지 아니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성남시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의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 접수

○ 접수 기간 : 2026. 10. 22.(목) ~ 2026. 10. 26.(월) / 3일간

○ 접수 장소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인사운영팀(인사담당자)

○ 접수 방법 :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

• 방문 접수

- 접수시간 : 09:00 ~ 18:00(중식시간 12:00 ~ 13:00 제외)

※ 토,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 불가

- 성남시청 민원여권과 민원실에서 **응시수수료(성남시 수입증지) 납부 후 응시원서 접수**

※ 일반임기제 및 한시임기제 7호 7,000원 / 한시임기제 9호 5,000원

- 원서접수 당일 응시를 취소하면 응시수수료 반환 가능(방문접수자에 한함)

- 대리인(타인)을 통한 응시원서 접수 가능

• 동기우편 접수

- 동기우편 접수는 원서접수 마감일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함

※ 택배, 퀵서비스 접수 불가

- **응시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우편통상환**을 우체국에서 구입 후 동봉하여야 함

※ 우편통상환은 금융업무이므로 우체국 마감시간 확인 요망

※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사용 불가

- 동기우편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의회동 3층
의회사무국 인사운영팀 인사담당자

※ 우편봉투 겉면에 '성남시의회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원서' 표기

6. 제출 서류

구 분	내 용	비고
①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 응시수수료(성남시 수입증지) 납부 후 제출 ○ 응시수수료 면제대상 및 제출서류(기준일 : 응시원서 접수일)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 증명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증명서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연금 수급자 증명서 (응시수수료 면제 근거 :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6조)	필수
② 이력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 이력서상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 ※ 경력증명서 등으로 증명이 가능하지 않은 경력 기재 금지	필수
③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	필수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	필수
⑤ 서류전형서류 1부 (별지 제5호 서식)	○ 자원봉사 실적이 있는 경우 실적확인서 (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자원봉사 활동 실적에 한함) ○ 해당사항만 작성(해당 없는 항목은 삭제 가능)	필수
⑥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 의견서 1부 (별지 제6호 서식)	○ 응시분야만 발췌 후 해당 자격기준 선택	필수
⑦ 동의서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자필 서명 필수)	필수

구 분	내 용	비고
(별지 제7호 서식)		
⑧ 동의서 1부 (별지 제8호 서식)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자필 서명 필수)	필수
⑨ 동의서 1부 (별지 제9호 서식)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자필 서명 필수) ※ 주민등록표 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을 발급받아 제출할 경우 동의서 미제출 가능	필수
⑩ 경력증명서 1부 (별지 제10호 서식)	○ 근무기간, 담당업무, 주당 근무시간, 발급 담당자 및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 ※ 경력증명서(제직증명서)는 발행기간 관인 날인이 있어야 함 ※ 정규직으로 상근 근무한 경우에도 상근(주 40시간) 여부 표기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관련분야 인정 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경력증명서 양식 상 구체적인 업무 및 기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발급기관의 인사기록서식, 업무분장표 또는 인사담당자 자필 확인 등의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시간제 근무, 비상근직, 비정규직, 프리랜서, 시민단체 등 근무 형태나 근무시간이 불규칙적이거나 불분명한 경우,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의 구체적으로 명시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 (예시 :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시, 근무 경력은 2년으로 인정) ※ 법인 및 단체 근무경력의 경우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제출 가능 ○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 사유 발생 시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소득금액증명 등 추가 증명자료 제출 ※ 폐업회사의 경우 국세청의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추가 제출 가능 ※ 국민연금, 고용·건강보험 납입증명서는 경력증명서로서 효력 불인정 ※ 제직 사실만을 확인 가능한 단순 제직증명서는 경력사항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전에 발급된 증명서상 경력은 인정 되지 않을 수 있음	필수
⑪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발급 또는 1577-1000번에서 발급 ※ 경력증명서상 근무경력 확인용이며, 일치하지 않을 경우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응시자가 직장가입자로 표기된 내역만 출력	필수

구 분	내 용	비고
	○ 미해당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제출	
⑫ 최종학교 졸업 (학위)증명서 1부	○ 석사 이상 졸업자의 경우 학사 이상의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고등학교 졸업자는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	
⑬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1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채용분야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⑭ 각종 대회 수상, 상훈, 우대사항 등 증빙자료 1부	○ 해당자에 한함	

□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함
- 증빙서류는 사본 제출이 가능하며, 발급기관이 모호하거나 해외인 경우 원본 지참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특히 외국어로 기재된 경우(졸업증명서, 학력·경력증명서, 어학능력성적표 등)의 경우 공증 번역된 한글 번역본 제출
- 제출 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크립 또는 집게로 고정하여 제출
- ※ 제출서류 편철시 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양면인쇄 금지

7. 보수 수준

- 임기제 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는 사람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연봉 하한액으로 책정함이 원칙이며, 구체적인 보수는 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음

구 분	근무 시간	보 수	비 고
정책지원관 [지방행정주사보]	주 40시간	50,272천원	연봉
정책지원관 [한시임기제7호]	주 35시간	2,230,200원	월지급액
일반행정 [한시임기제9호]	주 35시간	2,053,000원	월지급액

※ 연봉 외 보수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고용보험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시 가입 가능
(단,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8. 기타 유의사항

- ☐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성남시의회인사위원회에서 동일회차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 시험 관련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이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 응시원서 상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에 따라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 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 접수된 응시원서와 제반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학력·경력·자격 증명서를 원본으로 제출한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반환해 드립니다.
-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발표 후 신원조회·채용신체검사·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발급된 증명서류, 경력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연봉외의 보수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되며, 복무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을 적용합니다.
-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 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할 수 있으며, 재공고분야 응시자는 별도의 추가 원서접수 없이 기존 접수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 ☐ 최종합격자 발표 후 6개월 이내에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재공고 없이 평정 순위에 따라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 서류보완은 응시원서 접수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접수 기간 이후에는 일절 받지 않습니다.

- ☐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공무원연금법이나 군인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합니다(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1항).
- ☐ 본 공고내용은 성남시의회 의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성남시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의 공고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시험성적은 공개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용절차 및 원서접수 문의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인사운영팀 ☎ 031-729-2568